경력경쟁채용 분야별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

①-1 건축분야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- ❖ (자격증) 건축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자격증

기 술 사	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
기 능 장	건축목재시공, 건축일반시공
기 사	건축, 건축설비, 실내건축
산업기사	건축, 건축목공, 건축설비, 건축일반시공, 방수, 실내건축

부산 구산 원 당 북 남 주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 :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

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(별표1)에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"2. 건축공사업" 또는 "3. 토목건축공사업"에서 근무한 경력
- 건축사법 제4조(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)에 의해 설립된 "건축사사무소 "에서 근무한 경력
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(별표5)에서 전문분야 항목 "설계·사업관리"에 서 "일반"과 설계등용역 중 "설계등용역일반"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 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*,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건축관련 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채용
 용 후 관련업무에 근무한 경력
-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"건축분야" 중 조사인 력(보조 포함)으로 근무한 경력
 -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※ 충남의 경우 건축분야 합격자 소방특별조사 관련부서에 근무

①-2 건축분야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- □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
- ❖ (자격증) 건축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자격증

기 술 사	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		
기 능 장	건축목재시공, 건축일반시공		
기 사	건축, 건축설비, 실내건축		
산업기사	건축, 건축목공, 건축설비, 건축일반시공, 방수, 실내건축		

- 당해 분야 인정범위 :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
 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(별표1)에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"2. 건축공사업" 또는 "3. 토목건축공사업"에서 근무한
 - 건축사법 제4조(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)에 의해 설립된 "건축사사무소 "에서 근무한 경력
 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(별표5)에서 전문분야 항목 "설계·사업관리"에 서 "일반"과 설계등용역 중 "설계등용역일반"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 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
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*,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건축관련 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채 용 후 관련업무에 근무한 경력
 -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"건축분야" 중 조사인 력(보조 포함)으로 근무한 경력
 -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- ❖ (학력) 건축과 · 건축학과 · 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 - ※ 유사학과 범위 : 해당 학교 총(학)장이 발행한 <동일계통학과 증명서>로 인정
- ※ 경기의 경우 건축분야 합격자 소방특별조사 관련부서에 근무

중앙 경기

②-1 구급분**0** [소방사]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처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

- ❖ (자격증) 구급 관련 자격증(의사・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)을 취득한 후, 당해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
 - 1)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·구조·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
 - 2)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
 - 당해 기관 인정범위(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)

 - ② 「응급의료에관한 법률」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
 - ③ 「응급의료에관한 법률」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한 경력
 - ④ 「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
 - ⑤ 「지역보건법」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
 - ⑥「학교보건법」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
 -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(응급구조학과)에서 조교·교수로 근무한 경력
 -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·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(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)로 근무한 경력
 -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(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 복무확인서 필요)
 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*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
 - * 기타 공공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②-2 구급분**0f(항공)**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- ❖ (자격증) 구급 관련 자격증(의사・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)을 취득한 후, 당해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
 - 1)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·구조·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
 - 2)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
 - 당해 기관 인정범위(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)

경남 제주

- ① <u>「의료법」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</u>에 근무한 경력
- →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 ② 「응급의료에관한 법률」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
- ③ 「응급의료에관한 법률」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한 경력
- ④ 「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
- ⑤ 「지역보건법」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
- ⑥「학교보건법」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
-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(응급구조학과)에서 조교·교수로 근무한 경력
-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· 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(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)로 근무한 경력
-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(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 복무확인서 필요)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*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
 - * 기타 공공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③ 구급상황관리분야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경기

- ❖ (공공경력) 국가기관・지방자치단체・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*에서 구급상황관리사로서 3년 이상 그중 5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※ 임용예정계급 :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(별표3)
 -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(4)-1 구조분**0i**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

- (공공경력)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, 하사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* 특수부대 근무경력: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※ 미인정 기간: 임관을 위한 교육기간

 - O 아래 ①②항의 특수부대 출신자는
 - 경력증명서 1부 (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)와
 - 각 군별*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를 제출
 - * 육군 :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(발급처 : 육군본부 병적민원과) 해-공군 : '기타'란에 확인내용을 수기로 적시한 경력증명서

(발급처 : 해군본부 일자리정책과, 공군본부 전직지원정책과)

해병대 :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(발급처 : 해병대사령부 복지/전직지원처)

- ① (육 군) 육군특전사, 정보사, 강습대대, 신속대응사단, 군사경찰특수임무대(구.헌병특수임무대), 수색대대, 연대수색중대, 특공연대·대대, 특공여단, 기동대대, 연대기동중대, 기계화사단정찰대, 기계화사단정보대대예하지상정찰중대
 - (**공 군**) 공군공정통제사(CCT), 공군항공구조사, 군사경찰특수임무대(구.헌병특수임무대)
 - (**해 군**) 해군정보부대(UDU), 군사경찰특수임무대(구.헌병특수임무대), 해군특수전전단(구.해군특수전여단(UDT)+구.해군해난구조대(SSU))
 - (해병대) 해병대 수색부대(구.해병특수수색대), 해병대 유격대대, 해병대 기습대대, 해병대 공정대대, 해병대 지상정찰소대, 해병대 저격반, 해병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,

(국방부 직할)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1·24특임대대

② (기타 특수전부대)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

④-2 구조분(야)(수난)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□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

- ❖ (공공경력)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,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* 특수부대 근무경력 :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※ 미인정 기간 : 임관을 위한 교육기간
 - 아래 ①②항의 특수부대 출신자는
 - 경력증명서 1부 (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)와
 - 각 군별*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를 제출
 - * 육군 :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(발급처 : 육군본부 병적민원과)

해-공군 : '기타'란에 확인내용을 수기로 적시한 경력증명서

(발급처 : 해군본부 일자리정책과, 공군본부 전직지원정책과)

해병대 :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(발급처 : 해병대사령부 복지/전직지원처)

- ① 해군 특수전전단(구.해군특수전여단(UDT)+구.해군해난구조대(SSU))
- ② 해군 정보부대(UDU)
- ③ 해병대 수색부대(구.해병특수수색대)
- ❖ (자격증) 잠수 관련 자격증*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(4대 보험적용 사업장 근무자)
 - * 관련 자격증 : 잠수기능장, 잠수산업기사, 잠수기능사

강원

울산

세종

(4)-3 구조분(이상)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- ❖ (공공경력)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,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* 특수부대 근무경력 :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※ 미인정 기간 : 임관을 위한 교육기간
 - 아래 ①②항의 특수부대 출신자는
 - 경력증명서 1부 (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)와
 - 각 군별*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를 제출
 - * 육군 :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(발급처 : 육군본부 병적민원과)

해·공군 : '기타'란에 확인내용을 수기로 적시한 경력증명서

(발급처 : 해군본부 일자리정책과, 공군본부 전직지원정책과)

해병대 :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(발급처 : 해병대사령부 복지/전직지원처)

경남 제주

- ① (육 군) 육군특전사, 정보사, 강습대대, 신속대응사단, 군사경찰특수임무대(구.헌병특수임무대), 수색대대, 연대수색중대, 특공연대·대대, 특공여단, 기동대대, 연대기동중대, 기계화사단정찰대, 기계화사단정보대대예하지상정찰중대
 - (**공 군**) 공군공정통제사(CCT), 공군항공구조사, 군사경찰특수임무대(구.헌병특수임무대)
 - (**해 군**) 해군정보부대(UDU), 군사경찰특수임무대(구.헌병특수임무대), 해군특수전전단(구.해군특수전여단(UDT)+구.해군해난구조대(SSU))
 - (**해병대**) 해병대 수색부대(구.해병특수수색대), 해병대 유격대대, 해병대 기습대대, 해병대 공정대대, 해병대 지상정찰소대, 해병대 저격반, 해병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,

(국방부 직할)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1·24특임대대

② (기타 특수전부대)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

⑤ **기계분0**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- ❖ (자격증) 기계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자격증

기술 사	기계
기 능 장	기계가공
기 사	일반기계, 기계설계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

충남

-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
- 인정 실무경력
 - 기계설비의 설계·공사·유지·운용·점검
 - CAE(CAD 포함), 응용역학, 유체공학 관련 설계·제작·조립·설치·검사·보수·관리 등
 -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※ 충남의 경우 기계분야 합격자 소방특별조사 관련부서에 근무

⑥ 노무관리분야 (소방교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부산

- ❖ (공공경력)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*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 - ※ 근무(연구)경력은 노무 관련 법령해석, 심판·조정·자문·상담·지도, 단체교섭, 진정·고발·소송 대응 등 관련 실무경력에 한함
 - ※ 임용예정계급 :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(별표3)
 -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① **법무분()** (소방경) / 시험절차(면접)

서울

□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

충북 전북

전남

❖ (자격)「사법시험법」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(사법연수원 수료자)

❖ (자격) 「변호사시험법」에 의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

⑧-1 소방분야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- ❖ (자격증) 소방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자격증

기 술 사	소방
관 리 사	소방시설
기 사	소방설비(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)
산업기사	소방설비(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)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 :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

세종

-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
-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(별표1) 1.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
-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(별표1) 2.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
-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(별표1) 3. 소방시설감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
-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"소방분야" 중 조사인 력(보조 포함)으로 근무한 경력

⑧-2 소방분야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- □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
- ♣ (자격증) 소방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자격증

기 술 사	소방
관 리 사	소방시설
기 사	소방설비(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)
산업기사	소방설비(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)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 :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

경기

-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
-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(별표1) 1.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
-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(별표1) 2.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
-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(별표1) 3. 소방시설감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
-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"소방분야" 중 조사인 력(보조 포함)으로 근무한 경력
- ❖ (학력) 4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·소방안전공학과·소방방재학과·소 방행정학과·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
※ 유사학과 범위 : 해당 학교 총(학)장이 발행한 <동일계통학과 증명서>로 인정

※ 경기의 경우 소방분야 합격자 소방특별조사관련부서에 근무

®-3 소방분0·[소방관련학과] [소방사]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부 대 광 울 세 강 충 충 전 전 경 제 창

□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

- ❖ (학력)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·소방안전공학과·소방방재학과·소 방행정학과·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를 졸업하 고 학사(전문 포함)학위를 취득한 사람
- ❖ (학력)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·소방안전공학과·소방방재학과·소방행 정학과·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 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 점 이상 이수한 사람
 - * 유사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함【붙임 13】

⑧-4 소방분야 (소방장) / 시험절차(필기, 면접)

□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

- ❖ (자격증) 소방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자격증

기 술 사 호방 관 리 사 호방시설

- 당해 분야 인정범위 :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
 -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
 -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(별표1) 1.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
 -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(별표1) 2.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
 -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(별표1) 3. 소방시설감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
 -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"소방분야" 중 조사인력 (보조 포함)으로 근무한 경력
- ❖ (학력) 4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·소방안전공학과·소방방재학과·소 방행정학과·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를 졸업하고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

※ 유사학과 범위 : 해당 학교 총(학)장이 발행한 <동일계통학과 증명서>로 인정

※ 경기의 경우 소방분야 합격자 소방특별조사관련부서에 근무

경기

9-1 소방정분(이 기관사)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중앙 부산 충남 전북

전남

경남

- ❖ (자격증) 1~4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, 승무경력*이 2년 이상인 사람
 - *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(승무경력의 증명)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

⑨-2 소방정분(이) (항해사)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중앙

부산

전남 경남

창원

- ❖ (자격증) 1~4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, 승무경력*이 2년 이상인 사람
 - *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(승무경력의 증명)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

⑩-1 심리상담분0·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부산 울산 경기 강원

경북

- ❖ (공공경력)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*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 - ※ 근무(연구)경력은 심리상담 연구·조사·분석, 심리치료상담, 심리재활, 심리자문 실무경력에 한함
 - ※ 임용예정계급 :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(별표3)
 -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⑩-2 정신건강분야 (소방교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세종

- ❖ (공공경력)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*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 - ※ 근무(연구)경력은 정신건강 치료・간호・임상심리 실무경력에 한함
 - ※ 임용예정계급 :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(별표3)
 -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(1) **안전관리분():(가스)**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	❖ (자격증) 가스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○ 자격증			
		기 술 사	가스	
		기 능 장	가스	
울산		기 사	가스	
강원		산업기사	가스	
		기 능 사	가스	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			후 인정범위	
	-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자 -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"안전관리분이			

② 언론공보분()(콘텐츠제작)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중 조사인력(보조 포함)으로 근무한 경력

 ❖ (공공경력)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*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,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 ※ 근무경력은 디지털콘텐츠(영상, 이미지) 제작 및 편집과 관련된 실무경력에 한함

- ※ 임용예정계급 :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(별표3)
-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③ 외국어분야(영어) (소방교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- ❖ (검정시험)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- 1. 아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어느 하나 기준점수(등급) 이상 취득한 사람

TOEIC Speaking 7등급 이상
IELTS 8등급 이상
TOEFL Speaking section 27점
TEPS-Speaking 1등급 이상

세종

이처

- ※ 위의 검정시험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한다.
- 2.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 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있 는 사람
 - 전문성 확인을 위해 면접시험의 일부를 영어로 진행(예정) ※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(4) **의무소방전역분():**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세종 강원 충북

경남

- ❖ (공공경력) 의무소방원 만기 전역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예정인 사람
- ※ 만기전역 예정자가 최종합격 후 만기전역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됨

(5) **자동차정비분야**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❖ (자격증) 자동차정비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(군 경력은 제외)

중앙 경기 원남 북 국 제 주 ○ 자격증

기 술 사	차량
기 능 장	
기 사	자동차 정비
산업기사	
기 능 사	자동차정비, 자동차차체수리

- 당해 분야 인정범위(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)
 - 소방차량(소방펌프차, 소방물탱크차, 소방화학차,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) 및 특장 소방차량의 제조 또는 정비업체
 - 자동차 종합정비업(자동차 정기검사, 판금·도색관련 업무 제외) *법 개정전 1급 공업사

⑥ 자동차운전분야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❖ (자격증) 자동차운전 관련 자격증(제1종 대형운전면허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광주 대전

경기

충북 전남

경북

- 당해 분야 인정범위(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)
 -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
 -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
 - 건설기계(지게차 제외)
 -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, 도로보수트럭
 -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 적재식)
 -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,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
 - 특수자동차(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. 단, 대형견인차,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) ※ 1종 보통 또는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실무경력은 제외
 - ※ 도로교통법 개정('18.4.25.)전 대형운전면허를 요건으로 한 긴급자동차를 운전한 실무경력은 인정함

(17)-1 전기분야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- ❖ (자격증) 전기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자격증

대구 강원 충남 제주

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, 발송배전, 전기응용 기 능 장 전기 기 사 산업기사

- 당해 분야 인정범위
 -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
 - 인정 실무경력
 - 전기설비의 설계·공사·유지·운용·점검·감리
 -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전기분야 조사인력 (보조포함)으로 근무한 경력
-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- ※ 충남의 경우 전기분야 합격자 소방특별조사 관련부서에 근무

(Î)-2 전기분야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□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

- ❖ (자격증) 전기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자격증

기술사	건축전기설비, 발송배전, 전기응용	
기 능 장	전기	
기 사 산업기사	전기, 전기공사	

중앙 울산 경기 전남

- 당해 분야 인정범위
 -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
 - 인정 실무경력
 - 전기설비의 설계·공사·유지·운용·점검·감리
 -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전기분야 조사인력 (보조포함)으로 근무한 경력
-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- ❖ (학력) 전기과 · 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 - ※ 유사학과 범위 : 해당 학교 총(학)장이 발행한 <동일계통학과 증명서>로 인정
- ※ 경기의 경우 전기분야 합격자 소방특별조사 관련 부서에 근무

(17)-3 전기·전자분야(소방교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- □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
- ❖ (자격증) 전기 전자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자격증

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, 발송배전, 전기응용, 산업계측제어, 전자응용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

서울

-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
- 인정 실무경력
 - 전기설비의 설계·공사·유지·운용·점검
 - 전자 회로의 개발(응용), 전자기기의 설계·제작·조립·설치·검사·보수·관리
-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- ❖ (학력) 전기과 · 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 - ※ 유사학과 범위 : 해당 학교 총(학)장이 발행한 <동일계통학과 증명서>로 인정
- ※ 서울의 경우 전기·전자분야 합격자 화재조사 관련부서에 근무

(8-1 정보통신분OF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- ❖ (자격증) 정보통신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자격증

중앙 인천 강원 전북 제주 창원

기 술 사 정보관리, 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통신
기 능 장 통신설비
기 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정보처리, 정보보안, 방송통신, 무선설비, 전파전자통신, 정보통신, 빅데이터 분석
사무자동화, 정보처리, 정보보안, 방송통신, 무선설비, 전파전자통신, 정보통신, 통신선로

- 당해 분야 인정범위
 -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* 또는 민간업체
 - 인정 실무경력
 - S/W개발부서 및 D/B설계·운영부서에서 S/W개발(연구·운영)·D/B설계 (연구·운영)
 - 시스템(서버, 네트워크, DB, 스토리지, 보안장비) 구축·설계·운영
 - 통신, 방송, 무선, 정보설비 구축·설계·운영
 - 정보보안 기획·관제·운영·분석 및 침해사고 대응
 -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®-2 정보통신분(0f(전산)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- ❖ (자격증) 정보통신(전산)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자격증

기술사	정보관리, 컴퓨터시스템응용
기 능 장	
기 사	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정보처리, 빅데이터 분석
산업기사	사무자동화, 정보처리

서울 경기

- 당해 분야 인정범위
 -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* 또는 민간업체
 - 인정 실무경력
 - S/W개발부서 및 D/B설계·운영부서에서 S/W개발(연구·운영)·D/B설계 (연구·운영)
 - 시스템(서버, 네트워크, DB, 스토리지, 보안장비) 구축·설계·운영
 -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(B-3 정보통신분()[통신]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- ❖ (자격증) 정보통신(방송, 무선, 통신)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자격증

서울 대구 울산 경기 전남

기 술 사	정보통신
기 능 장	
	방송통신, 무선설비, 전파전자통신, 정보통신
산업기사	방송통신, 무선설비, 전파전자통신, 정보통신, 통신선로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

-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* 또는 민간업체
- 인정 실무경력
 - 통신, 방송, 무선설비 구축·설계운영
 -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⑧-4 정보통신분0f(정보보안)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- ❖ (자격증) 정보통신(정보보안)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자격증

기 술 사	정보관리,	컴퓨터시스템응용
기 사	저ㅂㅂ이	정보처리, 정보통신
근日기시		

서울 경기

- 당해 분야 인정범위
 -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* 또는 민간업체
 - 인정실무경력
 - 시스템 보안 관리, 정보보호시스템 구축.운영
 - 네트워크 보안,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등 정보보안 관련 업무
 -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(B-5 정보통신분야(빅테이터 분석)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- ❖ (자격증) 정보통신(빅테이터 분석)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자격증

강원 경남

기 술 사	정보관리, 컴퓨터시스템응용
기 사	빅데이터 분석, 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정보처리, 정보보안
산업기사	사무자동화, 정보처리, 정보보안

- 당해 분야 인정범위
 -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* 또는 민간업체
 - 인정 실무경력 : 빅데이터 수집・분석・응용・융합 및 데이터 관리
 -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

지정한 기관

⑩-1 화학분야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전북

 ❖ (공공경력) 군 화학분야(연막, 제독제외)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, 화학부대*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,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

*화학부대 : 국방부・육군・해군・공군・해병대 소속 화학지원대 또는 화학대대

⑨-2 화학분야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□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

- ❖ (자격증) 화학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 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자격증

기술사	화공
기 능 장	위험물
기 사	정밀화학, 화공, 화약류제조, 화학분석, 바이오화학제품제조
산업기사	화약류제조, 바이오화학제품제조, 위험물

울산 경기 충남 전남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

-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
- 인정 실무경력
 - 화학공정 및 장비에 대한 연구·설계
 - 화학물질 취급 등의 안전관리
 -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
 -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- ❖ (학력) 화학과·응용화학과·화학공학과·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 - ※ 유사학과 범위 : 해당 학교 총(학)장이 발행한 <동일계통학과 증명서>로 인정
- ※ 충남의 경우 화학분야 합격자 화재조사 관련 부서에 근무

⑩-3 화학분야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- □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
- ❖ (자격증) 화학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 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자격증

기술사	화공
기 능 장	위험물
기 사	정밀화학, 화공, 화약류제조, 화학분석, 바이오화학제품제조
산업기사	화약류제조, 바이오화학제품제조, 위험물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

제주 창원

-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
- 인정 실무경력
 - 화학공정 및 장비에 대한 연구·설계
 - 화학물질 취급 등의 안전관리
 -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
 -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- ❖ (공공경력) 군 화학분야(연막, 제독제외)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, 화학부대*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,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

*화학부대 : 국방부・육군・해군・공군・해병대 소속 화학지원대 또는 화학대대

① -4 **화학분**0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- □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
- ❖ (자격증) 화학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 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자격증

기술사	화공
기 능 장	위험물
기 사	정밀화학, 화공, 화약류제조, 화학분석, 바이오화학제품제조
산업기사	화약류제조, 바이오화학제품제조, 위험물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

- 중앙 인천 경남
-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
- 인정 실무경력
 - 화학공정 및 장비에 대한 연구·설계
 - 화학물질 취급 등의 안전관리
 -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
 -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- ❖ (학력) 화학과·응용화학과·화학공학과·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
※ 유사학과 범위 : 해당 학교 총(학)장이 발행한 <동일계통학과 증명서>로 인정

❖ (공공경력) 군 화학분야(연막, 제독제외)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, 화학부대*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,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

*화학부대 : 국방부・육군・해군・공군・해병대 소속 화학지원대 또는 화학대대

① -5 화학분야 (소방교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중앙 대전 ❖ (학력) 화학과, 응용화학과, 화학공학과,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
※ 유사학과 범위 : 해당 학교 총(학)장이 발행한 <동일계통학과 증명서>로 인정

⑨-6 화학분야 (소방장) / 시험절차(필기, 면접)

광주 경기 ❖ (학력) 화학과, 응용화학과, 화학공학과,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
※ 유사학과 범위 : 해당 학교 총(학)장이 발행한 <동일계통학과 증명서>로 인정

⑨-7 화학분야 (소방장) / 시험절차(필기, 면접)

- □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
- ❖ (자격증) 화학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자격증

기 술 사 화공

- 당해 분야 인정범위
 -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
 - 인정 실무경력
 - 화학공정 및 장비에 대한 연구·설계
 - 화학분석에 대한 연구
 -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
 -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-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- ❖ (학력) 화학과, 응용화학과, 화학공학과,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
※ 유사학과 범위 : 해당 학교 총(학)장이 발행한 <동일계통학과 증명서>로 인정

※ 서울의 경우 화학분야 합격자 화재조사 관련부서에 근무

② **회계분이** [소방교]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❖ (공공경력)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*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(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*을 해당 부문・분야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년)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**이 1년 이상인 사람

전북

서울

- * 소방기관에서 특수기술부문(회계)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** 근무(연구)경력은 회계관련 실무경력에 한함
- ※ 임용예정계급 :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(별표3)
-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